

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12월 11일
제 안 자 : 김학인 의원 외 4인

제안이유

-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·외 여비지급 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의원 여비 기준표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의장, 부의장 및 의원의 국내·외 여비 지급기준(숙박비)을 인상 조정함.
(제4조관련 [별표1]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별표 1의 의장 · 부의장의 숙박비(1야당)란중 “41,000”을 “46,000”으로 하고,
의원의 숙박비(1야당)란중 “22,000”을 “25,000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